

6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7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
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**제46조의7(정비지구의 지정 해제)**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46조의5를,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.

③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비지구의 위치·면적,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
3. 정비지구 해제 사유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**제46조의8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의 지원)**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 연료공급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## 제5장 보칙

**제47조(권한의 위임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8. 11., 2012. 2. 2., 2012. 11. 27., 2013. 3. 23., 2020. 10. 8., 2022. 7. 19., 2024. 11. 5.>

1. 삭제 <2012. 11. 27.>

- 1의2.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2.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
3. 삭제 <2012. 11. 27.>

4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

5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·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

6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

7. 삭제 <2022. 7. 19.>

8. 법 제28조제1항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·변경승인

9. 법 제29조제1항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실시계획승인·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의 송부

9의2. 법 제30조제2항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
9의3.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·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